

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

검토보고

행정기획위원회(도시안전과)

의안번호	제 96 호
제 출 자	정윤주 의원 외 12명 (2023. 02. 09.)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
검 토	전문위원 정 진 만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 촉진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 근거로써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의 목적,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위촉대상, 임기, 구성 등을 규정함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활동 범위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함 (안 제6조 ~ 제7조)
- 라.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- 마. 표창에 대해 규정함 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예산에 관련된 조사 및 편성 필요
- 다. 입법예고 : 2023. 2. 9. ~ 2023. 2. 14. [6일간]

4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의4 제3항1)에 따라 성북구의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전보안관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안전 감시활동으로 안전 위해 요인의 발굴 및 개선을 통해 ‘안전한 도시 서울’을 구현하기 위해 “우리동네 안전감시단”이 2015년 8월에 구성되어 2018년 6월까지 활동하다가 2018년 10월부터 “안전보안관”으로 명칭 변경하여 현재까지 구성·운영 중에 있으나,
- 우리구는 자치구 차원의 개별 조례 없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전액 시비 보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기가 2022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음.

- 1) 제66조의4(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2. 30., 2017. 1. 17.>
1.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(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)
 2.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
 3.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·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·보급
 4.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 5.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·활용 및 공개
 6.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
- 6의2.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
7.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추진에 관한 총괄·조정 업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12. 3.>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-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·단체에서 추진하는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3.>
- [본조신설 2013. 8. 6.]

○ 안전보안관 현황

- 인원 : 50명
- 임기 : 2년, 연임가능(제3기 안전보안관 : 22.1.20.~23.12.31)

구분	합계	A조	B조	C조	D조	E조	F조
인원	50명	8명	9명	9명	8명	8명	8명
활동 지역	20개동	성북, 삼선	동선,보문, 안암, 정릉1돈암1, 돈암2	정릉2, 정릉3, 정릉4	길음, 종암	월곡1, 월곡2, 장위2	장위1, 장위3, 석관

○ 활동실적

연도	기별	예산현황			활동실적 (안전신문고 신고 기준)
		예산액	집행액	집행잔액	
2020	안전보안관	19,110	12,140	6,970	안전신고 : 685건 교육.회의개최 : 2회
2021	안전보안관	21,810	14,070	7,740	안전신고 : 372건 회의개최 : 미개최

※ 코로나19상황으로 각 주민센터 방역활동 지원 적극참여, 회의 및 교육 미개최

○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안 제1조(목적)부터 안 제2조(정의)까지는 기본적·총괄적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각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3조(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)는 안전보안관 위촉을 위한

자격조건을 명시한 부분으로, 주요 활동은 생활 속 위해요소를 점검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요건보다는 구민이면 누구나 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으며, 구민이 아니라도 관내 기관 소속의 직원이라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안 제4조(교육 및 임기)와 안 제5조(대표단 구성)는 안전보안관을 위촉한 후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대표단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, 이는 최소한의 절차와 구성에 관한 것임.
- 안 제6조(안전보안관의 활동)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, 생활 속 위해요소를 신고하여 제거하고 안전에 취약한 지역을 점검하는 등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7조(활동지원 등)의 경우 현재 서울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1인당 월 3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고 간담회비로 1인당 월 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활동용품(조끼, 모자, 방한용품 등)을 배부하고 있으며, 안점점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임.
- 안 제8조(관리 및 해촉)는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고, 해촉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별로 규정한 내용이며,
- 안 제9조(표창)는 안전보안관이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인정될 경우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5. 검토의견

-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, 서울시 4개 자치구(강서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도봉구)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8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조례안은 우리구 안전보안관 제도를 정착화하여 생활 속 위해요인을 발굴하는 등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인정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하며,
- ‘서울시 안전보안관 표준 운영 조례안’을 반영하여 제정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- 다만, 무보수 안전보안관들의 순수한 참여로 나타난 결과물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며, 활동내용과 우수사례 선정을 통하여 합당한 포상을 하고, 현장에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비 지급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, 기존 안전보안관 구성원의 다양화, 안전보안관의 지원, 활동영역 보장,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됨.